

유엔인권해설집

고문방지

Human Rights



유엔인권해설집
고문방지



COMBATING TORTURE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사람은 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년, 7조)

“고문”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또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행한 행위 또는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위해, 또는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협박 또는 공갈하기 위해, 또는 여하한 종류의 차별을 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 의해 또는 이러한 자들의 사주에 의해, 또는 이러한 자들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개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심한 고통 또는 고난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인 제재조치에 고유한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이나 고난은 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4년, 1조 1항)

주(註)

본 책자는 유엔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제4권을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



Contents_

서론	11
I. 관련 국제인권제도	13
-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	13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 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1975)	14
- 법집행 공무원의 행동강령(1979)	14
- 법집행 공무원의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1990)	16
-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의 수형자와 구금자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보건요원, 특히 의사의 역할 에 관한 의료윤리의 원칙(1982)	16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18
-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징역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원칙(1988)	19
-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1990)	20
- 국제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1998)	21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 적인 조사 및 문서화에 관한 지침서(1999)	21
II. 조약감시기구	22
- 고문방지위원회	22
- 회원국 보고서의 심사	23

- 비공개 조사	24
- 개인통보절차	25
- 심리적격	25
- 임시보호조치	27
- 본안의 심사	27
- 기타조약감시기구	28
(a) 자유권규약위원회	28
(b)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9
(c) 아동권리위원회	29
(d) 인종차별철폐위원회	30
- 조약감시기구에 인권침해 제보 방식	31
III. 특별보고관	32
- 고문관련 특별보고관	32
- 긴급청원	33
- 인권침해의 주장	34
- 진상조사(당사국방문)	35
-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37
-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37
(a) 인권침해의 주장과 긴급청원	38
(b) 진상조사(당사국방문)	39
(c) 보고서	40
(d)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관련 정보를 제보하는 방법	41
IV.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기금	44
- 기금의 운영	44
- 프로젝트와 지원대상의 유형	44
- 기금이 지원하는 보조금	45
- 기금의 배경	46
- 프로젝트 인정가능성 및 선정기준	46
- 기금에 대한 기부	46
- 기금의 활동내역 보고	47
- 기금 사무국의 문서와 연락처	48

V. 주요현안들	49
- 강간과 성차별적 폭력의 유형들	49
- 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	50
- 체형	51
- 협박/위협	51
- 고문피해자, 증인, 고문피해자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복	52
- 비정부 부문에 의한 고문	52
-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임박한 강제송환	53
- 구금환경	54
- 의료제공의 거부	55
- 계구	55
부록: 청원서 양식	57
부록 I -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통보서식	57
부록 II - 여성차별철폐협약 통보서식	62
부록 III - 고문특별보고관에 보내는 설문지 서식	66
부록 IV -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비공개 정보 양식	70

|서론|

고분은 희생자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유엔은 애초에 고분을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자행하는 가장 사악한 행위들 중 하나로 규정했다.

고분은 국제법상의 범죄이다. 모든 관련 기구 및 제도에 의해 고분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여하한 조건 하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고분의 금지는 국제적 관습법에 해당한다. 이는 고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당사국이 비준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적인 또는 광범한 고분의 자행은 인간성을 부정하는 범죄이다.

1948년, 국제사회는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고분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규탄했다. 1975년 유엔 총회는, 비정부기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화답하여, 고분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모든 인간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고분 금지에 관한 법적 기준과 제도, 그리고 그러한 기준과 제도의 시행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1981년에는

고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기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유엔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자발적 기금(The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이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1984년에는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이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되어 1987년 발효되었다.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여부는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의해 감시된다. 1985년에는 세계 고문 상황을 보고하는 권한을 위임 받은 독립적인 전문가인 고문관련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었다. 같은 기간 중에 총회는 수형자(prisoner)와 구금자(detainee)들에 대한 고문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보건 요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구금 중인 자들의 처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결의안들을 채택했다. 1997년 12월, 유엔 총회는 6월 26일을 유엔 세계 고문희생자 지원의 날(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로 선포했다.

유엔은 고문 방지를 위한 투쟁에서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을 거듭 강조해 왔다. 비정부기구들은 유엔 기구 및 감시 절차들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또 수립된 기구 및 절차의 시행에도 귀중한 공헌을 해 왔다. 고문 특별보고관과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전문가들, 그리고 고문방지위원회를 비롯한 조약 감시기구들은 비정부기구 및 개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 관련 국제인권 제도

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1차 유엔회의(the First United Nations Congress)에 의해 1955년 채택되었으며, 1957년 7월 31일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663 C (XXIV)와 1977년 5월 13일자 2076 (LXII)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

최저기준규칙은 “수용자 처우와 구금시설의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적절 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관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 행정적 조치에 의한 구금된 자, 혐의 없이 구금된 자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된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최저기준규칙은 “유엔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최소의 조건들”을 의미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수용자의 입소, 수용자의 격리와 분류, 수용설비, 위생 시설, 음식, 식수, 개인위생에 필요한 물품, 침구의 제공, 종교 의식, 교육, 운동, 의료, 정신질환이 있는 수형자의 치료 등에 관한 최소 기준들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징계 및 진정 절차, 구금자에 대한 계구의 사용,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제한다. 특히, 체형을 비롯한 모든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벌을 징벌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또, 구금 시설 직원의 자격과 행동을 규제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유엔 총회는 1971년 12월 20일자 결의안 2858 (XXVI)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형사 및 교정 기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최저기준규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총회는 회원국들에게 최저기준규칙을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편입시키는 분제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1975)

이 선언은 1975년 12월 9일자 유엔 총회 결의안 3452 (XXX)에 의해 채택되었다. 1조는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무원에 의해 또는 공무원의 사주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당사자가 저지른 행위 또는 저지른 혐의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또는 특정인이나 다른 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고난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정하는 한도 내의 적법한 제재 조치에 고유한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이나 고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고문은 극심하고 의도적인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된다.

3조는 전시 또는 전쟁 위협, 국내 정치 불안, 또는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를 비롯한 여하한 예외적인 환경도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집행 공무원의 행동강령 (1979)

법집행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1979년 12월 17일자 유엔 총회 결의안 34/169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강령에는 충기를 포함하는 무력사용에 대한 지침과 구속 중인 자에 대한 의료의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 “법집행 공무원 (law enforcement officials)”이라는 용어는, 특히 체포와 구금할 권한이 있는 자를 비롯한, 경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법 관리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된다.

5조에 규정된 고문의 금지는 고문방지선언(Declaration against Torture)에서 채용한 것이다.

여하한 법집행 공무원도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가하거나, 사주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며, 상관의 명령, 또는 전시 또는 전쟁 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국내 정치불안 또는 기타 국가 비상사태를 비롯한 예외적인 환경을 방지하여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정당화 할 수 없다.

5조의 주석에 따르면,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 되어야 한다.

이 강령은 법집행 공무원에게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3조). 따라서 무력은 범죄의 예방, 또는 범법자의 적법한 체포를 집행 또는 지원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총기는 무장 저항 또는 타인의 생명이 위협한 경우,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용의자를 체포하기 어려울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 공무원은 구금 중인 자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즉시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6조).

1989년 경제사회이사회는 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을 채택했다(결의안 1989/61). 이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강령에 담긴 원칙들을 국가 법률과 관행에 반영시키고,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적 기강, 외부적 통제 및 감독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법집행 공무원의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1990)

이 기본원칙은 1990년 9월 7일 쿠바의 하바나에서 열린 범죄의 예방과 범법자의 대우에 관한 제8차 유엔회의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에서 채택되었다. 이 기본원칙은 무력과 총기의 적법한 사용, 불법적인 집회와 구속 또는 구금 중인 자의 경비, 그리고 직무 중 무력과 총기의 사용에 관한 보고 및 심사 절차 등에 적용된다. 제7원칙은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무력과 총기의 자의적인 사용 또는 남용은 국내법에 의해 형사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8원칙은 국내의 정치불안 또는 기타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들도 이 원칙의 규정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무력과 총기는 다른 수단으로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전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원칙). 법집행 공무원은 범법 행위의 심각성과 소기의 합법적인 목적에 대해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상과 상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상해를 입은 자에게는 의료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수형자와 구금자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보건요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의 원칙 (1982)

의료윤리의 원칙은 1982년 12월 18일자 유엔 총회 결의안 37/194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원칙의 서문에서, 유엔 총회는 “의료인 또는 기타 보건요원들이 의료 윤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경고했다. 총회는 국가, 직업단체, 그리고 기타 기구들에게 보건요원이 고문 또는 그 밖의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나 처벌에 대한 묵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보건요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이나 보복 기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요원들, 특히 의사들은 의료윤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원칙은 보건요원은 수형자와 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구금되지 않은 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품질의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형태의 고문이나 학대 또는 고문이나 학대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제2원칙).

수형자나 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취조 행위에 협력하는 것도 의료 윤리에 위배된다. 그러한 협력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수형자나 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대우 또는 처벌을 당사자가 받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증명하는 행위(제4원칙)와, 당사자나 다른 구금자 또는 감시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때를 제외할 경우, 수형자나 구금자의 제압에 가담하는 행위(제5원칙)가 그것이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되고,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의 가입국들은 법률로써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 행위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가해야 한다. 또, 모든 고문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고문에 의한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진술서가 고문을 가한 용의자가 고문을 가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고문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피부양자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재할을 받을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권리를 확립해야 한다.

전시 또는 전쟁위협, 국내 정치불안 또는 기타 모든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하는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상관 또는 국가기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을 자행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입국들은 다른 국가에서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자를 그 국가로 송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강제송환금지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 한편, 가입국들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영토 내의 고문 혐의자를 형사소추하거나, 형사소추를 위해 다른 나라로 인도해야 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징역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원칙 (1988)

1988년 12월 9일자 유엔 총회 결의안 43/173에 의해 채택된 이 원칙은 체포 및 구금 중인 자의 법률 및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와 자신의 구금, 체포, 취조, 의료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들을 규정한다. 가입국들은 이 원칙에 반하는 여하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련 진정이 제기될 경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제7원칙).

원칙6은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징역 상태에 있는 자는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주석에 따르면,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가능한 한 광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학대를 포함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학대로는 구금자 또는 수형자의 시각 또는 청각, 또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인지력 등, 타고난 감각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 가두는 행위도 포함된다.

원칙21은 구금자는 폭력, 위협 또는 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의 취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하한 구금자도, 자신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학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22원칙)고 규정한다.

증거확보과정에서 본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금자에게 불리한 증거의 적격성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준수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제27원칙).

구금자 또는 수형자의 변호인은, 특히 고문 또는 기타 학대 행위에 대하여, 구금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위임 받은

적절한 기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고, 부당하게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떠한 진정인도 진정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원칙).

구금자의 체포 또는 이송이 발생하면 즉시 구금자의 가족들 또는 구금자가 지정하는 기타의 사람들에게 구금자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제 16 원칙). 구금시설 또는 수감시설에 입소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금자 또는 수형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후, 필요할 때마다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제21원칙).

구금시설에는 구금시설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아닌 관계당국이 자격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책임을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토록 해야 한다. 구금자는 그러한 자들과 “자유롭고 비밀이 보장되는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갖는다(원칙 29).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1990)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은 1990년 12월 14일자 유엔 총회 결의안 45/111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수용자들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존중 받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차별을 받지 않으며,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규범은 존중되어야 한다. 수용자들은 인격의 완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및 교육 활동의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의 기회를 받아야 하며, 차별 없이 모든 보건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또, 금치는 폐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998)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국제법정의 설치를 규정한 로마규정이 1998년7월17일 유엔전권대사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¹⁾

7조는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하게 자행되는 고문과 “의도적으로 인체 또는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엄청난 고통 또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기타 유사한 잔혹한 행위들”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고문은 “구금 중인 자 또는 고문혐의자의 통제 하에 있는 자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또는 고난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되며, “단, 그러한 고통이나 고난이 합법적인 제재조치에 고유한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조사 및 문서화에 관한 지침서 (이stanbul 의정서)(1999)

이 지침서와 지침서에 담겨있는 원칙들은 40개 기구 또는 기관들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이 마련한 것이다. 유엔 총회는 이 원칙이 부속되어 있는 결의안 55/89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이 원칙들을 고문과의 전쟁에서 유용한 도구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항).

이stanbul 의정서는 고문에 관한 진정과 보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문서화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조사관들,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고

1) 유엔공식문서 A/CONF. 183/9 참조

분 혐의자들과 그들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능력 있고 공정한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제2원칙). 조사자들에게는 모든 필요한 정보와 예산과 전문적 시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고문 혐의자들과 증인들을 소환하고, 증거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제3원칙 (a)). 조사 결과는 공표되어야 한다(제5원칙 (b)).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은 모든 취조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제4원칙).

제3원칙 (b)에서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들, 증인들, 조사를 진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조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 폭력 위협, 또는 모든 형태의 협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고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고소인, 증인, 그리고 이들의 가족 및 조사 담당관들에게 직간접적인 통제력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II. 조약감시기구

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17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인권 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망과 능력을 인정받는 10명의 전문가들”을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한다. 위원회는 매년 제네바에서 4월이나 5월에 한번, 그리고 11월에 한 번 등 총 두 번의 정기회기를 갖는다.

위원회의 책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회원국들의 정기보고서를 심사하고(19조), 특정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믿을만한 징후가 포착되면 비공개로 조사에 착수한다(20조). 협약 위반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통보를 심사한다(22조). 또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제출하는 진정을 심사한다(21조).²⁾ 개인과 국가에 의해 제출된 통보는 위원회가 이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한 회원국들에 대한 경우에만 심사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회원국들과 유엔 총회에 제출한다.

회원국보고서의 심사(19조)

회원국들은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가입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새로 취한 모든 조치들에 관한 보충적 보고서를 4년에 한번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다른 보고서들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회원국 대표들은 그러한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추가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보고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긍정적 측면, 협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분제점들, 우려 사항, 권고 등의 표제로 구성되는 “결론과 권고”를 채택하여 공표한다.

회원국 보고서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비정부기구, 법조계 대표 및 개인들이 제출한 믿을만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한다. 비정부기구들은 당사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위원회가 회원국 보고서를 심사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질 수 있다.

²⁾ 21조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아직까지 그러한 진정서가 제출된 바는 없음.

비공개 조사(20조)

위원회는 어떤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입수하면, 협약 20조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조사에 착수한다. 단, 분체의 회원국이 28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그러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문이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보고된 고문 사건들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점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상당한 지역에서 상습적이고, 광범위하고,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일 때는 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문은 정부의 직접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제도적인 분체일 수도 있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들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고문이 상존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행정 당국이 이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고문을 실질적으로는 허용하는 부적절한 법률이 조직적인 고문 관행을 조장할 수도 있다.³⁾

위원회는 20조에서 규정된 종류의 정보를 입수하면, 당사국에게 조사의 협조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위원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들이 당사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국의 동의를 요청한다. 위원들은 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관계 당국자들과 사법부 인사들, 그리고 비정부기구 대표들을 만나고, 구금시설을 방문한다.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소견 또는 제안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당사국에게 전달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3) 총회 공식회의록, 제48차 회기, 부속서 44 (A/48/44/Add. 1), 29절 참조.

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조사 결과의 개요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인통보절차(22조)

22조에 의거하여, 개인들은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인정한 회원국이 협약 조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록1, 통보 양식).

심리적격(admissibility)

통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a) 익명이 아니어야 하며, 22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한 당사국의 관할을 받고 있는 개인이 제출할 것.
- (b)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 조항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임을 주장할 것.
- (c) 통보서가 피해자, 피해자의 인척,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자, 또는 피해자가 통보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정당하게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다른 자들에 의해 제출되었을 것.
- (d) 통보가 22조에 명시된 통보 제출권의 남용이 아니고, 22조의 조항들과 모순되지 않을 것.
- (e) 동일한 사건이 다른 국제조사 또는 화해절차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받고 있지 않을 것.⁴⁾

(f)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 절차들을 완료할 것.⁵⁾

22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사건들 대다수가 송환 시 고문의 위험 (3조)에 관한 조항을 내세운다.⁶⁾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적격성 기준의 해석에 관해 많은 결정들을 채택한 바 있다.⁷⁾ 예를 들면, 모든 국내 구제제도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을 내린 바 있다. 즉, 통보인은 당사국에서 판결 과정의 일부인 행정 결정과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해야 한다. 통보인은 망명 심사에 관한 최고 사법기구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부가 인도주의적 및 동정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법정 구제제도가 있는 당사국에서는, 통보인은 정부에 그러한 권리의 포기를 요청해야 하며, 그러한 요청이 거부된 때에는 사법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 위원회는, 회원국이 3조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한, 그 당사국이 특정인의 자국 내 거주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내린 결정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위원회는, 3조에 비추어 볼 때, 본래의 추방 명령이 더 이상 집행 가능하지 않을 때, 또는 통보인이 당사국에 임시로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가증을

4) 위원회는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또는 미주인권재판소 등의 지역인권기구에 제출되었고, 조사를 받는 사건은 국제 조사 또는 화해 절차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위원회가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임.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또는 여성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의 비전통적인 인권위원회 기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이 적용되지 않음.

5) 통보인이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해당 당사국의 사법당국에 제출된 바 있는 사건 이외의 사건은 위원회 분안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내 사법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효력을 잃음. 이와 같이, 위원회는 통보인이 국가의 관계당국에 구제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국내 구제 절차가 효과가 없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통보, 또는 고문 주장에 대한 사법 조사가 명명 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사법방해의 징후가 없는 한 인정 가능한 통보로 간주하지 않음.

6) 3조: (1) 여하한 회원국도 다음 국가로 추방, 귀환, 또는 본국 송환되면 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를 그러한 국가로 보내서는 아니 된다. (2) 그러한 근거가 있는 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은 문제의 국가에서 심각하고 명백한 또는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 모든 관련 사항들을 고려한다.

7) 22조에 관련하여 3조의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 (1996) (United Nations document HRI/GENA/Rev.5) 참조.

발부 받은 때, 그리고 “당장 추방을 당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같은 통보를 심리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고 선언했다.

임시보호조치

위원회는 통보의 적격성 또는 본안을 심사하는 동안 (절차규칙 108(9) 및 110 (3)), 통보인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송환 (3조)의 위험을 내세우는 때에는, 통보인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방하지 말 것을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임시 보호조치의 요청은 통보의 심리적격 또는 본안에 대한 위원회의 관점을 예고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본안(merits)의 심사

통보의 심리적격은 통보의 본안을 기초로 심사된다. 심리적격 결정이 내려진 후 6개월 내에 당사국은 사건을 설명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취한 구제조치에 관한 해명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진술서들은 통보서 작성자에게 전달된다. 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 입장은 통보서 작성자와 당사국에 통고 된다. 위원회가 협약이 위반된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한 결정에 대응해서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을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적격 결정들은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공표된다.

위원회가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상황에 대해서, 당사국이 그에 대응하여 취한 시정조치들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당사국에 독촉장을 보낸다.

기타 조약감시기구

그 밖에도 많은 국제 인권기구들이 고문 및 학대를 금지하며,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감시 기구들을 설치하여 회원국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 방식은 고문방지위원회의 경우와 유사하다.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사할 자신의 권한을 승인한 회원국들을 상대로 개인들이 제출하는 통보를 접수한다. 이들 기구들의 심리적격 기준은 서로 유사하다.

(a) 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조는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10조 (1)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 날 때부터 부여 받은 존엄성을 존중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No. 20 (1992)에서 회원국들은 법적 및 기타 조치들을 통해, “공적 권한에 의거하여, 혹은 공적 권한을 남용하여, 혹은 사적인 권한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한 7조의 위반 행위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7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교육적 또는 징계적 조치로서 부과되는 과도한 징벌 등 체형에도 적용된다. 회원국들은 송환 또는 추방을 통해 개인들을 다른 국가로 복귀시킴으로써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b)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1979년 협약은 여성폭력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 권고 (General Recommendation No.19 (1992))를 통해 성차별적 폭력은 협약 1조가 의미하는 차별에 해당하며, 그러한 폭력에 의해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국제법상의 권리가 훼손되거나 파괴된다고 지적한다.⁸⁾

이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통보서의 본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당사국에게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잠정적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서 통보 사건의 심리적격 또는 본안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c)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1989년 협약 37 조는 회원국들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조는 정신적 및 신체적 학대로부터의 아동의 보호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회원국들은 부모, 법률적 보호자, 기타 다른 사람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들을 성적 학대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 또는 학대, 태만 또는 무관심한 대우, 혹사 또는 성적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원문은 동 인권해설집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음.

협약 31조에 의거해서, 회원국들은 “아동들을 모든 형태의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가적, 양자간 및 다자간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000년 9월, 위원회는 하루의 일반논의 인정을 “법과 공공질서”의 명분으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국가 폭력과 국가가 운영, 허가, 또는 감독하는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국가 폭력의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토론⁹⁾에 할애했다. 위원회는 법적 조치, 의식제고 및 훈련, 그리고 감시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 국가, 국제사회,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에게 전달하는 36개 권고안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당사국들에게 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청소년 사법제도를 비롯한 법률적 제도를 통해, 처벌 또는 징벌을 목적으로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권고 8). 위원회는 “가족을 잃은 아동 또는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또는 위반한 것이 인정된 아동들이 받는 대우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회원국들이 시급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 20).

(d)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1965년 국제협약 5조에 의거해서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며, 인종, 피부색, 또는 국가적 또는 민족적 출신을 불분하고, 정부 관리, 민간 집단 또는 기구들에 의한 폭력과 신체적 상해로부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9) 2001년 9월 전체회의에서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조약감시기구에 인권침해 제보 방식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관할하는 사항들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아래 주소로 제보되어야 한다.¹⁰⁾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211 Geneva 10
Fax.: +41-22-917 9022
E-mail address: webadmin.hchr@unog.ch
Switchboard number: +41-22-917 9000 또는 +41-22-917 1234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관할하는 사항들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아래 주소로 제보되어야 한다.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New York
Fax.: +1-212-963-3463¹⁰⁾

10) 2004년 11월 현재 우편은 Petition Team,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팩스번호는 기존과 같으며, 이메일은 tb-petitions@ohchr.org를 사용하여야 함. [감수자주]

11) 2004년 11월 현재 팩스번호는 +41-22-917-9022로 변경 [감수자주]

E-mail address: daw@un.org

상기 기구들을 비롯한 조약 감시기구들의 연례 보고서와 결정들, 보도자료 및 관련 문서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 (www.unhcr.ch¹²⁾에서 Programme, Conventional Mechanisms, Committee against Torture/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을 클릭할 것)¹³⁾에 게시되어 있다.

Ⅲ. 특별보고관

고문 관련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위원회는 1985/33 결의안을 통해, 고문과 관련된 의문을 조사하고, 이러한 의분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입수 및 접수하고, 그 정보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보고관은 매년 자신의 활동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고문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검토하며, 각국 정부들에게 고문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제출한다. 특별보고관의 책무는, 고문과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12) 2004년 11월 현재 www.ohchr.org로 변경됨. [감수자주]

1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www.ohchr.org)에서 Human Rights Bodies에서 해당 조약감시기구를 클릭할 것. [감수자주]

관한 협약의 비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한다.

특별보고관의 책무는 3가지 주요 활동들로 구성된다. 긴급청원(urgent appeal)과 진술서(allegation letter; 고문이 있었다는 주장)를 각국 정부에 전달하고, 고문이 단독적인 그리고 산발적인 사건을 넘어서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된 국가들에 대한 진상 조사(국가 방문)를 하며, 특별보고관의 활동, 책무 및 활동 방법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한다.

국제조약 하에서 설치된 조약감시기구들과는 달리, 특별보고관은 고문의 위험 (“긴급청원”) 또는 고문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진술서”) 등 개인이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시도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 문제가 되는 사안이 1개 이상의 기구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주제별 기구들과 국가별 보고관들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공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긴급청원 (Urgent Appeals)

특별보고관은 개인 또는 일단의 개인들이 정부 관리나 그들의 사주 또는 목인을 받은 다른 자들로부터, 특히 구금 중에, 고문 또는 다른 형태의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청원”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사안의 시간적 긴박성 때문에 특별보고관은 당사국의 외무장관에게 직접 팩스를 전송하여, 사건의 진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국 정부에게 당사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또, 당사자가 체형, 관련된 국제법상 규정들에 반하는 계구의 사용, 구금

중인 자에 대한 장기적인 통신 차단, 독방감금, “고분적인” 구금 환경, 의료 및 적절한 영양보급의 거부, 그리고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해 고문이나 기타 잔혹한 행위, 과도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의 임박한 본국송환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나 기타 학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 특별보고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아래의 “주요 현안들” 참조). 또, 고분행위에 면책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국제적 고분금지노력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 긴급 항의를 전달한다.

인권침해의 주장 (Allegations)

특별보고관은 접수된 고분에 관한 진술들 중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국에 “진술서”(allegation letters)의 형태로 전달한다. 이 진술서에는 특별보고관이 접수한 고문사건의 개요가 기록되며, 전반적인 고문상황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언급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일반적 진술들은 고문의 조직적인 양상 또는 특정 피해자 또는 가해자 집단의 양상, 특정 고문방법의 사용, 학대에 해당하는 구금환경, 고문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특정 법률을 지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보고관은 형법 조항 (체형을 허용하는 규정), 형사소송법 (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 취조의 기간), 사면을 허용하는 법 조항 또는 기타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실질적 또는 합법적으로 불처벌을 규정하는 법규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특별보고관은 당사국 정부에게 그러한 진술들의 진상을 밝히고, 모든 조사의 상황에 관한 정보, 모든 의료검진 자료, 고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신원과 그들에게 내린 징계 또는 형사처벌, 피해자와 피해자 가

족들에게 지급한 보상의 성격과 액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 특별보고관은 세계인권선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상기 주장된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 인권규약들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진상조사 (당사국 방문)

특별보고관은 특정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문과 다른 형태의 학대가 발생하는 제도적 및 법률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당사국 정부에 구체적 권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의 방문을 통해 그러한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진상조사는 당사국 정부의 초청이 있을 경우에만 착수하지만, 특별보고관은 방문하도록 초청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접수된 진술들의 건수, 충실도, 심각성과 진상조사가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진상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보고관과 그와 동행하는 유엔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한다. 그러한 사항으로는 국가 전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 모든 조사, 특히 교정시설, 구금 시설, 취조장소에 대한 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 정부 모든 부분의 중앙 및 지방 당국자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권한, 비정부기구, 기타 민간기구 및 언론사 대표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권한, 특별보고관의 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증인 및 기타 민간인들과 비밀이 준수되고 감시받지 않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한, 책무에 관련된 모든 문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또, 특별보고관의 책무와 관련해서 특별보고관과 접촉하는 어떤 관리 및 민간인도 이와 관련해서 위협, 학대 또는 차별을 받거나 사법 처리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줄 것을 당사국 정부에게 요청한다.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특별보고관은 정부당국자(행정부 수반 포함)들, 비정부기구, 법조계 대표들, 고문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들과 그들의 인척들을 만난다. 또, 교정시설, 구금시설, 취조장소들을 방문해서 체포에서 형 집행에 이르는 형법 절차의 운용과정에 관한 정보를 직접 입수한다. 고문 피해자들, 증인들,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들을 포함하는 기타 민간인들과 비밀이 보장되고 감시되지 않는 면담을 실시한다. 특별보고관은 진상조사 보고서에 접수한 개별 진술서들을 언급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의 책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구금 환경의 감시도, 특히 구금 환경이 수용자의 건강 또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에는, 당연히 특별보고관의 책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아래의 “주요 현안들” 참조).

특별보고관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 체포와 구금에 관한 조항 등 고문금지와 관련된 법률을 약술하여 설명한다. 보고서에서는 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의 기간, 징벌, 자격을 갖춘 변호인 선임, 법률적 지원, 보석 조항, 증인보호, 자백의 증거적격성, 의료전문가와 법의학 서비스의 신분과 독립성, 시민단체 회원들의 구금시설에의 접근 등의 사항들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진상조사의 결론과 권고사항에 관해 국가대표들과 비정부기구들이 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별보고관의보고서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며, 1999년부터는 총회에 연례 임시보고서를 제출해 오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특별보고관이 정부들에 전달할 모든 서한의 개요(“긴급청원” 및 “기타 진술서”)와 정부들로부터 접수한 서한의 개요가 기록된다.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들에서 관찰한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고문진술에 대한 결론은 기술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세계 고문상황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문을 유도하는 특정 현안¹⁴⁾ 또는 상황들을 언급하고, 전반적인 결론과 권고를 제시하기도 한다. 진상조사에 관한 보고서들은 인권위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회에 제출하는 임시보고서는 특별보고관의 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추세와 최근 실제적, 법적, 그리고 절차적 상황들을 약술한다.¹⁵⁾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 및 총회의 연례 회기 중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보고서들은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토의된다.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71년 유엔인권위에 의

14) 지금까지 다루어와 같은 현안들이 다루어져 왔음. 고문 금지 규정의 제한적 적용 불가 (E/CN.4/2002/137), 인종주의와 고문 (E/CN.4/2001/66), 체형 (E/CN.4/1997/7), 아동고문의 금지 위반 (E/CN.4/1996/35), 고문의 성별 형태 (E/CN.4/1995/34), 고문 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위원회의 상호관계 (E/CN.4/1988/17), 의료요위의 역할, 고문방지규정 위반책임 고문 시정 및 방지에 관한 국가기준(c.4/1987/13), 고문의 유형과 방법, 고문용 도구들의 거래, 고문과 그 밖의 인권침해(E/CN.4/1986/15)등.

15) 지금까지 다루어와 같은 현안들이 언급되었음. 고문의 한 유형으로서의 협박, 고문의 한 유형으로서의 강제적 또는 미지반적 실종, 성적 소수집단에 대한 고문과 차별, 고문과 불치병 방지와 투병성 (A/56/156), 고문의 성별 유형, 고문과 아동, 고문과 인권활동가들, 고문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 고문과 빈곤 (A/55/290), 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미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문서화에 관한 지침서 (이스탄불 의정서),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A/54/426).

해 설치되었다.¹⁶⁾ 최초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여성폭력 철폐에 관한 선언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여성폭력의 분류에 따라 자신의 책무를 세분화 했다.¹⁷⁾ 그러한 분류로는 가정에서의 여성폭력, 지역사회에서의 여성폭력, 국가에 의하거나 국가가 묵인하는 여성폭력 등이 있다. 이 선언은 여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적 또는 사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상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모든 폭력 행위,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 강압 또는 자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 선언에서 여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신체적, 성적 그리고 심리적 폭력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 (a) 구타, 가정 내 여아들에 대한 성적학대, 지참금관련 폭력, 배우자에 의한 강간, 여성 성기 절단 및 그 밖에 여성에게 위해가 되는 관행, 혼인관계가 아닌 자의 폭력, 착취와 관련된 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 (b) 강간, 성적학대, 직장,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추행 및 협박, 여성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 (c) 전시를 포함하여 국가에 의하거나 국가가 묵인하는 폭력.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활동 방법은 고문 특별보고관의 경우와 유사하다(상기 참조). 긴급 청원과 진술을 전달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유엔인권위에 여성폭력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a) 인권침해의 주장과 긴급청원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여성폭력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한

16) "여성의 권리를 유엔 인권기구에 통합시키고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문제"라는 제목이 붙은 결의안 1994/45는 1994년 3월 4일 56차 회의에서 표결 없이 채택되었음.

17) 1993년 12월 20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48/104 참조.

다는 목적으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특정한 여성폭력 사건의 진술에 관한 해명과 정보, 또는 그러한 폭력을 허용하는 전반적인 여성폭력 상황에 관한 해명과 정보를 각국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여성의 생명권 또는 개인적 안전에 대한 긴박한 위협, 또는 그러한 위협으로 인한 공포에 관한 긴급청원도 접수 받는다.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성차별적 여성폭력만을 다룰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이라는 이유로¹⁸⁾ 가해지는 여성폭력만을 다룬다. 해당 청원 내용이 접수되면,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먼저 진술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정보를 당사국 정부에 전달한다. 당사국 정부에 전달할 때,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한다.

1. 침해된 것으로 보고된 국제인권기준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진보적 기준들도 포함된다.
2. 사건을 해결하거나, 사건에 대한 권고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당사국 관계기관에게 요구한다.
3. 동일한 특정 유형의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들에 입각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며,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당사국 정부에게 요청을 한다.

(b) 진상조사 (당사국 방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그동안 당사국의 방문기간 중에 군대 내의 성노예, 인신매매, 강제매춘, 민간인에 의한 강간, 가정폭력 등을 포함하는 유형별 여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당사국이

18) 특별보고관이 채택하고 있는 성차별적 폭력의 정의는 여성폭력 근절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차용한 것.

유형별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기준들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었으며, 여성폭력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구체적인 예방 및 구제 조치들의 효과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c) 보고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상조사 보고서와 당사국 정부들에 전달한 모든 서한들의 개요(“긴급청원” 및 “기타 진술”)와 당사국 정부로부터 접수한 서한들의 개요에 관한 보고서가 인권위에 제출되는 연례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된다. 보고서들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위 연례회기 중에 제출되며, 각국 정부들과 비정부 기구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논의된다.

매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는 가정폭력, 지역사회 여성폭력, 무력충돌을 비롯한 국가에 의한 또는 국가가 묵인하는 여성폭력 등 만연하고 있는 3대 여성폭력에 해당하는 여성폭력 상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적 기준들을 분석화하고, 향후 방향과 미해결 문제들을 고찰하며, 수많은 국가별 사례 연구들을 포함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소견과 쟁점을 제시한다.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여성폭력의 최대 원인으로 불처벌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강조한 원인은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남녀 간의 권력관계”로, 이는 경제적 차별과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관계를 조장 또는 요구하는 태도, 정형화된 성별역할 등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정당화 하는 문화적 관념, 폭력적 관행을 정당화 하는 종교적, 문화적 또는 전통적 사고방식, 언론이 상투적으로 묘사하는 여성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가정폭력 척결을 어렵게 하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그릇된 이해 등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성별과 다른 차별 요소들, 예를 들면, 인종, 민족, 성적 성향, 계층 등의 차별 요소들이 여성폭력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사적(비정부)집단 또는 개인들에 의한 여성폭력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책임을 저야 한다고 지적한다.

- 그 같은 사적인 행위가 국제조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
- 국가가 여성폭력을 저지른 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여성폭력에 대해서 다른 범죄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에게 평등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국가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생한 폭력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¹⁹⁾

(d)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관련 정보를 제보하는 방법

고분 또는 그 밖의 학대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진술), 또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것을 또는 발생하고 있을 것을 우려하는(긴급항의) 모든 개인, 집단, 비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또는 정부는 특별보고관에게 그 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음은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해야 할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들이다.

- (a) 피해자의 성명 (전체)
- (b) 고분사건이 발생한 날짜 (최소한 연월은 정확하게 기재)

¹⁹⁾ 여성폭력 근절에 관한 유엔선언 참조. 동 선언의 4조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지체 없이 여성폭력근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함

- (c) 피해자가 구속된 장소(도시, 도, 등)와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위치 (알고 있는 경우)
- (d) 인권 침해자에 대한 설명 (지위, 관련된 국가기관 포함)
- (e) 고문의 유형 및 상해 또는 피해자가 고문의 위협이 있다고 믿는 이유의 진술
- (f)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 또는 기구의 신원 (이름과 주소 - 관련 사항은 비밀이 보장됨)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으면,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침해되었거나 침해되었을 수 있는 권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사항들. 당사국이 인권 조약들을 승인한 때에는 위반된 것으로 믿어지는 조약의 규정들.
- (b) 진정이 여성 일반 또는 특정 집단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 관행 또는 정책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다른 여성들 또는 특정 집단의 여성들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개별 사건들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은 사적인 인권침해의 방지와 대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사적인 개인 또는 집단(정부 관리가 아닌)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의 경우에는,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인권침해를 방지, 조사,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모든 정보를 요구한다. 그러한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 그러한 인권침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 (b) 부적절한 구제책 또는 권리에 관한 정의 등 기존 법률상의 모든 허점

- (c) 관계당국이 해당 사건 또는 다른 유사한 사건들의 접수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는 않는 행위
- (d) 관계당국이 해당 사건 또는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기소하지 않는 행위
- (e) 사건의 기소 또는 선고에서 성차별적 관행
- (f) 진술된 유형의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통계 및 기타 자료.

특별보고관의 책무에 속하는 모든 정보는 아래주소로 제출되어야 한다.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on violence against women

c/o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211 Geneva 10

팩스: +42-22-917 9006

이메일: webadmin.hchr@unog.ch²⁰⁾

전화(교환): +41-22-917 9000 또는 +41-22-917 1234

고문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기타 주제별 및 국가별 보고관의 모든 연례보고서와 진상조사보고서, 결의안, 보도자료, 기타 관련문서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 (www.unhchr.ch, 에서 Programme, Extra-Conventional Mechanisms, Thematic Mandates,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중 원하는 사항을 클릭할 것)²⁰⁾에 게시되어 있다.

20) Urgent-action@ohchr.org로 변경. [각주자취]

21)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www.ohchr.org)에서 Issues>SR on Violence Against Women 순으로 클릭할 것. [각주자취]

IV.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유엔기금

기금의 운영

고문의 신체적 및 심리적 후유증은 치명적이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미친다. 고문피해자들의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들이 고문의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1981년 12월, 유엔총회는 고분희생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기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발적 기금을 모금하는 유엔고분피해자 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인권부분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 능력을 인정받은 의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탁위원회(Board of Trustees)의 자문을 받아 유엔사무총장이 운영한다. 위원회의 모금권한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위원회는 보통 매년 5월 중에 업무일 기준으로 10일 동안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회기 중에 지난해의 보조금 사용 내역과 새로운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권고안을 채택한다. 특히, 위원회는 정기적 기부자들과 고분방지위원회, 고분 특별보고관과 회의를 개최한다. 기금과 위원회의 사무국은 제네바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소재하고 있다.

프로젝트와 지원대상자의 유형

이 기금은 고분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보조한다. 기금은 매년 전 세계 60,000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자금사정

에 따라,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들에게 고분피해자들의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01년 5월, 신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유엔사무총장은 70개국의 187개 프로젝트에 총 8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기금이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은 해당 프로젝트의 12개월 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로젝트의 예산은 현지의 실질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금에 요청하는 액수는 해당 프로젝트 총 예산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 또는 세미나 보조금은 신탁위원회가 결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다. 신탁위원회는 이전에 지급한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술적 및 재무적 보고서가 만족스럽고 판단한 경우에만, 프로젝트의 지속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고, 새로운 보조금 지급을 권고한다.

보조금이 신청되면 해당 프로젝트가 지원할 고분피해자와 그 가족의 수, 고분의 유형과 후유증, 필요한 지원의 유형, 프로젝트 요원들이 보유한 고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 지원 받을 피해자들의 사례연구 등을 비롯한 프로젝트의 분안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결정된다. 이런 종류의 비밀정보는 신탁위원회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보조금의 수효와 액수는 사전에 결정되거나 지리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신탁위원회는 대부분 자금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소규모의 고분피해자 지원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기금의 배정

매년 사무국이 프로젝트 보조금 신청에 관한 수락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한다. 신탁위원회는 사무총장이 등록 받은 새로운 기부금과 접수된 심사적격한 신청서들을 근거로 보조금 승인을 권고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프로젝트들은 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서술, 재무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인정가능성 및 선정 기준

심사적격성의 평가기준과 기타 선정기준은 기금의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인정가능성을 승인 받으려면 보조금신청서를 기금의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금의 지침과 신청서 양식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Civil Society Support Initiatives” 이라는 제목하의 내용에서 입수하거나, 기금 사무국에 요청하면 된다 (아래의 연락처 참조).²²⁾

기금에 대한 기부

1983년 이래 이 기금은 전 세계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요 국제기구들 중의 한 기구로서 활동해 왔다. 기부금이 제때에 등록되어 당해 년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부자들은 기금의 연례회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기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탁위원회는 연례회기에서 기금의

22) 현재 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www.ohchr.org)를 방문하여 About OHCHR Funds>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How to apply to the fund 순으로 검색. [참주지주]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년 자발적인 기부금이 필요하다.

매년 증가하는 지원금 요청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고문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기금의 지원은 세계 많은 기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며, 앞으로 지원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총회, 유엔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고문 특별보고관, 유엔사무총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신탁위원회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각국 정부들, 단체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매년 기금에 기부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할 수 있다.

- (a) 은행 이체는 미국달러의 경우 “United Nations Geneva General Fund” (c/d UBS AG, PO Box 2770, CH-1211 Geneva 2, 계좌번호 240-CO-590-160.1)로 이체하고, 다른 통화인 경우에는 (c/o UBS AG, 동일주소, 계좌번호 240-CO-590-160.0, 긴급주소 UBSWCHZH12A)로 이체하면 된다.
- (b) 수표는 “The United Nations”을 경유하여, The Treasurer,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CH-1211 Geneva 10, Switzerland로 보내면 된다.

모든 경우에서 기부자들은 “수취인 (Payee): account CH,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를 명시하기 바란다.

기금의 활동내역 보고

유엔사무총장은 이미 제공된 또는 약속된 기부금과 승인한 보조금의 총액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신탁위원회가 제출하고 사무총장이 승인한 모든 권고 사항들과 보조금을 제공한 프로젝

트들의 목록이 포함된다. 고문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젝트들의 인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에 관한 다른 세부 정보들은 제공되지 않는다.

기금 사무국의 문서와 연락처

지침과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그리고 유엔 총회와 인권위에 제출된 보고서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http://www.unhchr.ch/Programmes/Voluntary or Trust Funds/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http://www.unhchr.ch/Programmes/Voluntary%20or%20Trust%20Funds/United%20nations%20Voluntary%20Fund%20for%20Victims%20of%20Torture)).²³⁾

문서작성 또는 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 주소의 사무국에 연락하기 바란다.

Trust Funds Unit, Support Services Branch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CH-1211 Geneva 10

Tel.: 0041-22 917 9315

Fax: 0041-22 917 9017

E-mail: unvft.hchr@unog.ch²⁴⁾

23) 주석 22)의 홈페이지 및 검색순서 참조. [감수자취]

24) unvft@ohchr.org로 변경. [감수자취]

V. 주요 현안들

강간과 성차별적 폭력의 유형들

강간을 고문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국제법 체계에 따라²⁵⁾ 고문 특별보고관²⁶⁾과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상기 참조)은 강간과 성폭력 진정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문 특별보고관은 성차별적 고문이 공무원에 의해 또는 공무원의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²⁷⁾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여성성기절단, 명예살인(honour killing)(정조상실, 간통에 대한 사형), 순장(sati) 및 순장과 유사한 여자의 신체를 학대하는 관습 등 “심각한 고통이나 고난”(고문과 “유사한”)을 초래하는 문화적 관습들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근절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가정폭력을 근절할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국제기준은 1980년 대 이래 부각되었다.²⁸⁾ 회원국들은 관습, 전통, 그리고 종교를 이유로 가정 내 여성폭력을 옹호할 수 없으며, 여성 폭력적인 문화적 관행을 국제사회의 감시로부터 감출 수 없다.²⁹⁾

2000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남녀평등에 관한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No. 28을 채택했다. 이 일반규정의 11항은 유엔인권위원회가

25) 유엔인권위는 결의안 1998/38에서 고문 특별보고관에게 여성에 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그리고 그러한 고문을 유발하는 환경에 관한 문제들을 계속 조사하고, 강간을 포함하는 성차별적 고문의 방지와 근절을 위하여 권고하는 한편, 효과성의 제고와 상호협력을 위해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의 접근을 교환할 것을 요청했다.

26) 고문 특별보고관은 1992년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구금 중인 여성에 대한 강간 또는 다른 형태의 성폭력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신체보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히 미열한 행위임이 틀림없으므로 고문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ummary record of the twenty-first meeting, United Nations document E/CN.4/1992/SR.21, para.35)

27) 특히, 고문 특별보고관은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처녀성 검사, 강제 낙태 및 강제 유산 등의 문제를 다루어왔음. (문서 E/CN.4/1995/34 및 A/55/290 참조)

28) 특히, 여성폭력 근절에 관한 선언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 권고안 No. 19 참조

29) UN document E/CN.4/2002/83 참조.

고분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관한 7조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성기절단의 근절, 강제 낙태와 강제 불임수술의 금지, 그리고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들의 안전한 낙태를 위해 취한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³⁰⁾

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 (Incommunicado detention)

고분은 변호인이나 가족, 인척, 또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접촉이 차단된 사람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 유엔인권위는 결의안 1999/32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장기적 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은 고분을 부추길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 (5항). 그러므로 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에 있는 자가 고분을 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구금이 장기화 될 때에는, 고분 특별보고관은 긴급항의이라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별보고관은 비밀장소 또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해지는 외부교통권이 박탈된 구금은 고분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조에 규정된 고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체형 (Corporal punishment)

체형을 포함하는 “합법적인 제재조치”는 고분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처벌의 국제적 정의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합법적인 제재조치란 국제사회 일반이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준한 형벌만을 의미한다. 유엔인권위는 결의안 1998/38에서 체형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처벌 또는 심지어 고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박/위협

유엔인권위는 결의안 2001/62에서 고분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조에 규정된 “협박을 통한 고분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고분”을 규탄했다 (2절). 고분 특별보고관은 어느 한 개인이 신체적 고분과 그 밖의 형태의 학대를 받을 위험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위협과 협박에 관한 정보가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결의안 2001/11에서 “유엔과 유엔인권기구들의 대표들에게 협력하는 민간인 개인들과 단체들에 대한 협박과 보복에 관한 보고가 계속 제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다시 표명하고, 유엔사무총장에게 그러한 개인들과 단체들에 대한 보복주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 자료를 담은 보고서를 인권위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30) UN document HRI/GEN/1/Rev.5 참조.

고문피해자, 증인, 고문피해자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복

고문 특별보고관은 고문피해자들, 그들의 인척, 시민사회 구성원, 고문사건을 맡은 변호인, 고문피해자를 대리하는 의료 또는 기타 전문가들에게 보복 조치가 취해지거나, 보복하겠다는 협박이 있을 때에도 개입을 한다.³¹⁾ 특별보고관은 자신에게 협조한 개인 또는 집단들에 대한 보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관계인들을 모든 형태의 협박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각국 정부들에게 요청한다. 특별보고관은 인권활동가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비정부 부문(non-state actors)에 의한 고문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1조는 고문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 또는 고난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원이나 공권력을 부여 받은 자의 사주 또는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질 경우에만” 고문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집행기관, 준군사조직, 민방위군 또는 기타 정부와 함께 일하는 또는 정부에 의해 용인되는 세력들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학대는 이 정의에 포함된다. 고문 특별보고관은 국가 기관들이 비정부 부문에 의한 학대를 포함하는 학대(다시 말해, 그 같은 행위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를 효과적인 방지 “할 수 없거나 또는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을 지야 한다고

31) 특히, 고문 특별보고관은 고문방지협약 13조와 이스탄불 의정서 2(b)절을 고려함. 아래의 “관련 국제 규약” 참조.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13조는 모든 회원국들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영토에서 고문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모든 개인들이 관계 당국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건의 조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심판 청구인과 증인들이 진정 또는 제출한 증거를 이유로 여하한 학대나 협박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단한다.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임박한 강제송환(refoulement)

고문 또는 그 밖의 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고, 당사자들이 추방 유예 등 다른 효과적인 법적 수단에 호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박한(imminent)” 추방이 될 위험에 처한 개인 또는 집단은 다음의 절차들을 이용할 수 있다.³²⁾

강제출국의 위험(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을 주장하는 진정에 대해서, 고문방지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잠정적인 조치, 즉, 문제의 사건을 심사하는 동안 진정한 추방을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3조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이 추방당하면, 고문을 당할 “실질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절차적인 문제 또는 “당사자의 행위의 성격은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3조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3조는 “당사자가 범죄를 저질렀느냐의 여부와 그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천명했다.

고문 특별보고관은 강제출국의 해당정부가 문제의 인물들이 학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확보하고, 송환된 후 그들에 대한 대우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고문이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해당정부에 촉구할 수 있다. 고문 특별보고관은 송환의

32) 추방하는 국가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의 회원국인 경우에는 진정한 회원국들에게 추방의 유예 등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고유한 권한이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대상인 국가가 비정부행위자들에 의한 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을 때”에는 송환하는 국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간주한다. 상황이 긴급하거나 기타 긴박한 요인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고문방지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송환이 임박했고, 송환될 국가에서 고문을 당할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입증하면, 특별보고관이 그들을 대리하여 조치를 취한다.

구금환경

대단히 혹독한 구금환경도 피구금인에게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고문에 근접하는 고통 또는 고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문 특별보고관의 소관인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한 구금환경은 “고문”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 고의적 또는 의도적 요소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그리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이의 “회색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구금환경의 혹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문 특별보고관은 피구금인에게 할당된 공간, 물과 그 밖의 개인위생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제공, 적절한 의복과 침구의 제공, 음식과 식수의 양과 질, 오락 시설 (실외 운동 포함), 접견허용, 의료지원, 위생설비, 난방, 조명, 환기, 징벌제도, 진정절차, 구금시설 직원의 행동방식 등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의료제공의 거부

구금시설 또는 고아원 등의 국가시설에 수용된 자, 또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부상당한 자들에 대한 의료제공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고문 특별보고관의 소관이다. 이러한 정보를 접수하면, 특별보고관은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의료를 특히 수용자 대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규칙 22, 25, 26에 근거하여 요청한다. 규칙 22에 따르면, 수용자는 적어도 정신과적 지식을 일부 갖추고 있는 한 명의 자격 있는 의료요원과 자격 있는 치의학 요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문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규칙 25에 따르면 의료요원은 모든 건강하지 않은 수용자, 질환을 호소하는 모든 수용자, 의료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모든 수용자를 매일 진료해야 하며,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지속적인 구금 또는 그 밖의 모든 구금환경에 의해 손상 받았거나 손상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금시설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칙 26은 의료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음식의 양과 질, 시설과 수용자들의 위생 및 청결, 건강교육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구금시설 책임자에게 이에 대해 조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구(methods of restraint)

국제법하에서 계구의 이용은 일차적으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규칙 33은 수갑, 쇠사슬, 차꼬, 구속복 등 계구는 처벌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쇠사슬 또는 차꼬는 신체구속의 용도로 이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 밖의 계구들도 호송중 도주 방지, 의학적 이유 또는 수용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상해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고문 특별보고관은

이 규칙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록 1|

청원서 표준 서식: 통보용

관련 조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또는
-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상기의 국제조약들 중에서 근거하려는 절차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I. 작성자에 관한 정보:

성 :

이름:

국적:
 생년월일 및 출생지:
 본 진정사건에 관련하여 분서를 수취할 우편주소:

진정서의 제출인

작성자 본인인 경우: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리를 받는 당사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성 :
 이름:
 국적:
 생년월일 및 출생지:

당사자가 귀하의 대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 사실에 동의했다면, 당사자가 귀하에게 이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를 설명하십시오.

.....

또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와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

당사자를 대리하여 작성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상술하십시오.

.....

II. 당사국/ 위반한 조항/ 국내적 구제절차

선택의정서 당사국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선언을 한 국가 (고문방지위원회 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의 가명:

.....

위반한 혐의가 있는 규약 또는 협약의 조항들:

.....

모든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

당사국 내에서 주장하는 인권침해를 구제 받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취했거나 그러한 자를 대리해서 취한 조치들 법원과 그 밖의 관계기관에의 제소를 비롯해서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았으며, 어떠한 주장을 했고, 그 때가 언제였으며,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십시오.

.....

구제신청을 해도 부당하게 절차가 연기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또는 작성자에게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이러한 구제절차들을 모두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진술하십시오.

.....
.....

III. 그 밖의 국제적인 구제절차들

진정인은 다른 국제기구에 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까 (미주인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또는 아프리카인권위원회 등)?

.....
.....

만일 그러한 적이 있다면, 신청을 했거나, 진행 중인 구제절차(들), 구제신청 내용, 시점, 결과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십시오.

.....
.....

IV. 진정의 내용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인권침해의 사실과 환경들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십시오. 작성자가 진정하는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 또는 심사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사실들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가 진술하는 사실과 환경들이 어떻게 작성자의 권리를 침해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
.....

작성자 서명:

[이 진정서 표준 서식의 여러 항목 다음에 있는 빈칸에 답변을 써넣으시오. 공간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원본이 아닌 사본을 진정서에 동봉할 것):

대리권에 관한 문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권한위임에 관한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는 정당화 할 수 없는 경우):

- 작성자의 주장에 대한 국내법원과 관계당국의 결정 (관련법률의 사본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음):

.....

- 다른 국제조사 및 조정절차에의 진정 및 그 절차에 의한 결정:

.....

- IV절에서 진술한 사실과/또는 그 사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작성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또는 작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밖의 확증적 증거:

.....

이 정보를 동봉하지 않거나, 작성자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야 할 경우, 또는 동봉된 문서가 사무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서에 대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록 2 |

청원 지침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제출되는 개인통보 용

1. 진정서 작성자에 관한 정보

- 성
- 이름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국적/시민권
- 여권/신분증 번호 (있는 경우)
- 성별
- 결혼 여부/자녀
- 직업
- 민족적 배경, 종교, 사회단체 (해당되는 경우)

- 현주소
- 비밀 서한을 수취할 수 있는 우편주소 (현주소와 다른 경우)
- 팩스/전화/이메일
- 진정서를 제출하는 귀하의 자격이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밝히시오.
 - 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2인 이상의 집단인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바람.
 -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증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십시오.

2. 피해자에 관한 정보 (작성자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 성
- 이름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국적/시민권
- 여권/신분증 번호 (있는 경우)
- 성별
- 결혼 여부/자녀
- 직업
- 민족적 배경, 종교, 사회단체 (해당되는 경우)
- 현주소
- 비밀 서한을 수취할 수 있는 우편주소 (현주소와 다른 경우)
- 팩스/전화/이메일

3. 당사국에 관한 정보

- 당사국의 국명

4. 인권침해의 성격

작성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인권침해 행위와 가해자에 관한 진술
- 일자
- 장소
-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조항들. 진정서가 1개 조항 이상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진술할 것.

5.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완료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진술하십시오.
(예: 법적, 행정적, 입법적, 정책 또는 프로그램 구제책을 받기 위한 시도)

- 시도한 구제절차의 유형
- 일자
- 장소
- 조치를 취한 자
- 진정한 당국 또는 기구
- 사건을 심판한 법원의 명칭 (있을 경우)
-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술하십시오.

※ 주의: 모든 관련 문서들의 사본을 동봉할 것.

6. 다른 국제 구제절차

동일한 사건이 다른 국제조사 또는 조정절차하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으면, 그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 절차의 유형
- 일자
- 장소
- 결과 (있는 경우)

※ 주의: 모든 관련 문서들의 사본을 동봉할 것.

7. 일자 및 서명

- 일자/장소:
- 작성자(들) 및 피해자(들)의 서명:

8. 첨부서류 목록 (원본은 보내지 말고, 사본만 보낼 것)

| 부록 3 |

유엔인권위원회 고문 특별보고관

고문 피해를 주장하는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이 작성할 설문지 서식

고문에 관한 정보는 특별보고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c/o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CH-1211 Geneva 10, Switzerland로 보내야 한다.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설명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진정서의 접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소들을 갖춘 명확한 사건들만을 다룰 수 있다.

- a. 피해자의 성명
- b. 고분에 발생한 날짜 (최소한 연월)
- c. 피해자가 연행된 장소(도시, 도, 등)와 고분이 발생한 지점 (정보가 있는 경우)

- d. 고분을 자행한 자들에 관한 정보
- e. 고분의 유형과 고분의 결과 입은 상해에 관한 진술
- f. 진정서를 제출하는 자 또는 단체의 신원 (이름과 주소: 비밀 유지 보장)

요청한 정보를 모두 기록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분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의료 및 경찰기록 등 관련문서들이 사건의 전말을 보다 상세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같은 모든 문서들의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제출해야 한다.

I. 고문 피해자의 신원

- A. 성:
- B. 이름:
- C. 성별: 남성 여성
- D. 생년월일 또는 연령:
- E. 국적:
- F. 직업:
- G. 신분증 번호 (해당되는 경우)
- H. 활동(노조, 정치, 종교, 인도주의/자유 노조, 언론 등)
.....

I. 거주지 주소 및/또는 직장 주소

.....

II. 고문과 관련된 상황

- A. 체포와 뒤이은 고분의 날짜 및 장소
- B. 처음 연행하거나 고분한 한 자들의 신분 (경찰, 정보기관, 군대, 준군사단체, 구금시설 직원, 기타)

C. 구금 중에 변호사, 인척, 또는 친구들 등의 사람들이 면회를 허용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체포된 후 얼마나 시일이 경과된 다음에 허용 받았습니까?

D. 고분의 방법을 진술하십시오.

E. 고분의 결과 어떤 상해를 입었습니까?

F. 고분의 목적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G. 피해자가 구금 중 또는 후에 의사의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검진은 구금시설 또는 정부소속 의사가 했습니까?.....

H. 고분으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까?

I. 의사가 고분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는 증거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진이 실시되었습니까? 의료보고서 또는 진단서 등이 발급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고서들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J. 구금 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부검 또는 법의학 검사가 실시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III. 구제조치

국내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들이 구제조치를 밟았습니까? (관계기관, 사법부, 정치단체 등과의 진정) 그랬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IV. 본 진정서 작성자에 관한 정보

- A. 성
- B. 이름
- C. 피해자와의 관계
- D. 대표하고 있는 단체 (있는 경우)
- E. 현주소

| 부록 4 |

여성폭력에 관한 비공개 정보 양식

제보자: 정보를 제출하는 개인/단체의 이름과 주소는 비밀이 유지된다. 추가정보를 위해 제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촉해야 할지를 기록해야 한다.

- 이름 (제보자/제보단체):
- 주소:
- 팩스/전화/이메일:

피해자(들): 성명, 연령, 성별, 거주지, 인권침해와 연관된 전문적인 활동이나 기타 활동 등을 포함하는 피해자에 관한 정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정보 (여권 또는 신분증 번호). 피해자가 사건을 당사국 정부에 통고하는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십시오.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국적:
- 성별:
- 직업:
- 민족적 배경, 종교 및 사회적 집단 (해당하는 경우):

사건: 날짜(들), 장소 및 입었거나 방지해야 할 피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법률 또는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정책과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의 시행이 여성의 인권에 주는 영향을 요약하십시오. 가해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들) (알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또는 정부와의 관계 (있는 경우), 그들이 가해자라고 믿는 이유에 관한 설명. 민간인 개인 또는 집단들에 의한 인권침해의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정부 관리가 아닌)에는 정부가 그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고, 그 같은 인권침해로 인한 보상을 하려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경찰, 기타 공무원,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에 진정을 비롯한 피해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어떠한 진정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정부관리가 인권침해(또는 인권침해의 위협) 사건을 조사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진정을 한 경우에는 관계기간이 취한 조치, 본 기구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의 수사상황이나 수사결과가 얼마나 적절했는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십시오.

- 날짜: 시간: 지점/국가:
- 가해자의 수: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알고 있습니까?
- 가해자들의 성명:

- 피해자가 가해자(들)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 가해자에 관한 묘사 (모든 특징들을 기술)
-

사건의 진술:

피해자는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

사건을 국가의 관계기관에게 보고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관이고 진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

사건 발생 후 관계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관입니까?

어떤 조치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이 서식을 제출한 이후에 확보된 새로운 모든 정보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성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적절히 처리되었거나, 조사 또는 재판의 최종결과가 나왔거나 계획 또는 일어날 것이라 위협되었던 행위가 실시된 경우 그러한 모든 정보를 특별

보고관에게 통보되어야한다.

주소: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OHCHR-UNOG, 1211 GENEVA 10, SWITZERLAND

(팩스: 00 41 22 917 9006, 이메일: csaunders.hchr@unog.ch)

유엔 인권 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목록

- | | |
|---|--|
| <p>No. 1 인권기구 (Human Rights Machinery)</p> <p>No. 2 유엔인권장전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차개정판)</p> <p>No. 3 인권분야의 자문 및 기술적 협력 (Advisory Services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차개정판)</p> <p>No. 4 고문방지 (Combating Torture) (1차개정판)</p> <p>No. 5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철폐 투쟁에 대한 제2차 10개년 행동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De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p> <p>No. 6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2차개정판)</p> <p>No. 7 청원 절차 (Complaint Procedures)</p> <p>No. 8 인권을 위한 세계 공보 캠페인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for Human Rights)</p> <p>No. 9 원주민의 권리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1차개정판)</p> <p>No. 10 아동의 권리 (The Rights of the Child) (1차개정판)</p> <p>No. 11 초법적, 약식 및 독단적 처형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1차개정판)</p> <p>No. 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p> <p>No. 13 인도주의법과 인권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p> <p>No. 14 동시대적 형태의 노예제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p> <p>No. 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규약위원회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Human Rights Committee)</p> <p>No. 1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The Committee on</p> | <p>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차개정판)</p> <p>No. 17 고문방지위원회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p> <p>No. 18 소수민의 권리 (Minority Rights) (1차개정판)</p> <p>No. 19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p> <p>No. 20 인권과 난민 (Human Rights and Refugees)</p> <p>No. 21 적절한주거를 가질 권리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p> <p>No. 22 여성차별: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p> <p>No. 23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해로운 전통적 관행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p> <p>No. 24 이주노동자의 권리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p> <p>No. 25 인권과 강제퇴거 (Forced Evictions and Human Rights)</p> <p>No. 26 독단적 구금관련 실무그룹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p> <p>No. 27 유엔 특별보고관 17가지 인권 관련 FAQ (Sevente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p> <p>No. 28 자결권관련 용병활동의 영향 (The Impact of Mercenary Activities on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p> <p>No. 29 인권활동가: 인권 옹호활동을 위한 권리의 보호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ng the Right to Defend Human Rights)</p> |
|---|--|

“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은 제네바에 주재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제작하였다. 동 책자는 활발하게 고려되고 있거나 특별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선별된 인권분제를 다루고 있다.

“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은 많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권이 어떠한 것이고, 유엔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권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국제적 제도(international machinery)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었다. 내용 변경이 없고, 제네바 주재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재발행 기관이 협의하고 크레딧(credit)을 얻는다는 조건하에 유엔 공식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재발행이 가능하다.

문의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뉴욕사무소(New York Offic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유엔인권해설집
「고문방지」

|인쇄일| 2004년 12월 23일

|발행일| 2004년 12월 23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주 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02 2125 9660~5

|F A X| 02 2125 9666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313-7593(代)

ISBN: 89-90475-53-8 94300 비매품
89-90475-51-1 (세트)

